



결의안 제1호

헌장개정위원회 직원 임명 및 업무수행권한 확립을 위한 결의안.

2024년 12월 12일, 뉴욕시 시장은 뉴욕주 지방자치법 제36(4)절에 따라 헌장개정위원회를 설립했으며,

동법 제36(4)절에 따라 뉴욕시 헌장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활동할 13인을 임명했으며,

위원회는 뉴욕시 헌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효과적인 기능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본 결의안을 상정했으며,

따라서, 위원회는 본 결의안에 따라 Alec Schierenbeck을 위원회 집행이사로 임명합니다.

또한, 자치법 제36절에 따라 집행이사는 위원회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임명 및 해임하고, 보수를 결정하고, 직원의 전문적이고 질서 있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할 권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결의안을 추가로 채택합니다.

또한, 집행이사는 자치법 제36절에 따라 위원회를 대신하여 일체의 서비스, 시설, 자료, 데이터 또는 자금을 요청하고 수락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추가로 채택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위원회의 모든 조치와 일치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위원장은 집행이사에게 그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추가로 채택합니다. 이러한 권한에는 회의 및 청문 일정 수립 및 통지, 안건 준비 및 배포, 회의 및 청문 순서 결정 등이 포함됩니다.

날짜: 2025년 1월 7일